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방송사업자 범위 확대 등〉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073)

2024. 1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방송사업자 범위 확대	3
2. 중재위원 정원 증원	5
3. 추후보도청구권의 청구대상 확대	8
※ 참고자료	
1. 관계 부처 및 협회 등 의견	11
2. 중재위원 증원에 따른 비용추계	12
3. 언론중재위 사건 처리현황	13
4. 언론중재위원회 현황	15
5.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 현황	16
6. 제21대국회 유사 법률 발의 및 심사 현황	1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8. 22.

다. 회 부 일 : 2024. 8.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중심으로의 언론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권리침해적 보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 처리건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 10년간 조정건수가 약 7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사건을 처리하는 중재위원은 지난 2014년 이후 증원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음.

이에 법정 처리기한 내 사건처리가 어려워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법 취지 구현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특정 지역의 경우 중재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당 지역 당사자들의 권리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재위원의 증원이 시급함.

한편 현행 추후보도청구권은 당사자가 형사절차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보장되고 있어 비위협의를에 관한 징계 등 행정처분 사실이 보도되었으나 형사상 조치에 이르지 않은 자는 원천적으로 제외됨으로써 인격권 보호에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행정처분에 대해 보도 또는 공표된 후 무효확인·취소판결 등이 있었을 경우에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언론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

가. 방송사업자의 범위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추가함(안 제2조 제3호).

나. 언론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법률상 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함(안 제7조제3항).

다. 비위혐의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관련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취소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방송사업자 범위 확대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현행법이 적용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u>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u> 를 말한다. 4. ~ 21. (생략)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u>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u> -----. 4. ~ 21.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방송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방송사업자 근거 규정인 「방송법」 제2조제3호가 2006년 개정됨에 따라 위의 사업자 외에 “공동체라디오사업자”¹⁾가 방송사업자로 추가되었음.

1) 공동체라디오방송은 기존의 정규 출력 라디오방송과 달리 특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출력 라디오방송 매체로서, 지역의 소식, 의견, 정보, 문화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 송출하는 방송임.

「방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공동체라디오방송은 기존의 정규 출력 라디오방송과 달리 특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의 소식, 의견, 정보, 문화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 송출하는 소출력라디오방송으로, 2004년 시범사업으로 최초 도입된 후 현재 24개의 방송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정보와 시의성 있는 지역밀착형 재난방송을 송출하고, 지역주민이 직접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지역중심형 매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개정안은 「언론중재법」의 방송사업자 범위를 「방송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으로, 「방송법」에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방송사업자로서 법적지위와 그에 따른 이용자 권익보호 등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언론중재법」에서 규율하는 언론보도의 책임에 관한 사항에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제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봄.

2. 중재위원 정원 증원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의 정원을 현행 40명 이상 90명 이내에서 60명 이상 120명 이하로 증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략)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재위원회는 <u>40명 이상 90명 이내</u> 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각각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 <u>60명</u> ----- <u>120명</u> 이하의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 ⑪ (생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언론중재위원회는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현재 90명의 중재위원이 18개(서울 8개, 지방 10개, 1개부 당 5명)의 중재부를 구성하여 언론 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표 1]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구성 개요

정 원	40명 이상 90명 이내 (현원 90명)
위 원 구 성	①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②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③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①~③ 위원은 각각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함
임 기	3년(1회 연임 가능)
중재부	서울 8개, 지방 10개 (각 중재부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

그런데 최근 인터넷 기반 매체 증가 등에 따라 언론 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신청이 2005년 883건에서 2023년 4,085건으로 5배 가량 증가한 데 반해, 동 기간 중재위원은 80명에서 90명으로 10명이 증원된 것에 불과한 실정으로,

[표 2] 최근 연도별 조정신청 사건 접수건수

(단위: 건)

연도	'05	'07	'09	'11	'13	'15	'17	'19	'20	'21	'22	'23
접수 건수	883	1,043	1,573	2,124	2,433	5,227	3,230	3,544	3,924	4,278	3,175	4,085
위원 현황	80명		85명			90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각 중재위원이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가중됨에 따라 조정신청사건 처리에 법정기한(14일)²⁾을 넘은 평균 20일 내외가 소요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되고 있어, 매체의 강한 전파력으로부터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제기간 단축이 요구되는 상황임.

[표 3] 최근 연도별 조정신청사건 평균처리기일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평균 처리일수	19일	22일	21일	18일	19일	18일	15일	21일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개정안은 중재위원의 정원을 현행보다 30명 늘리려는 것으로, 중재위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제고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참고로, 위원회의 운영 재원은 법 제12조³⁾에 따라 전액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 받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30명이 증원될 경우 약 19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⁴⁾됨.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조정) ②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 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財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인건비 4억원, 운영비 11억원, 사업비 4억원 등(사무소 보증금, 시설공사비, 유형자산 등 일회성 비용 6억원 포함). 참고로, 2024년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예산은 138억원임.

3. 추후보도청구권의 청구대상 확대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추후보도청구권의 청구대상을 확대하여, 비위혐의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관련 행정처분⁵⁾이 무효확인·취소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 언론사등⁶⁾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 ----- -----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 또는 비위혐의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거나, 관련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취소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5)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대법원 1999.11.26. 선고 99부3 결정), 과장금 처분, 위반사실 공표, 시정명령, 과태료, 징계 처분 등이 행정처분에 해당함.

6)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나. 검토의견

추후보도청구권은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형사상 조치에 대해 보도된 이후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등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에 자신이 무죄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현행법에는 동 청구권이 「형법」에 따른 징역, 벌금 등 형사절차의 대상에만 적용되고 있는 바, 이에 속하지 않는 징계, 과태료, 영업정지 등 비위혐의와 관련된 행정처분⁷⁾ 사실이 보도된 이후 해당 처분이 취소되는 등의 경우에는 인격권 보호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추후보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형사절차 외에도 비위혐위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되는 경우에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7) 비위혐의 관련 행정처분 예시

- 기업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
- 식당에 대한 식품위생법상 **위반사실 공표, 과징금 처분, 시정명령 처분, 과태료 처분** 등
- 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
- 어린이집에 대한 영유아보육법상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 시 어린이집 **폐쇄 또는 과징금 처분**
- 시설물 관리주체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조치 명령**

다만, 비위협위와 관련된 행정처분에서 ‘비위협위 관련성’⁸⁾ 및 ‘행정 처분 해당성’⁹⁾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이 훼손 및 청구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¹⁰⁾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은 행정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취소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 추후보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법원의 무효확인·취소판결 등은 비위행위 관련성 및 행정처분 해당성에 대한 판단을 거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후 절차인 추후보도청구로 인한 법적 안정성 훼손 우려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봄.

문 의 처
02)6788-5380

8) 개정안은 행정처분 중 비위협위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대해 추후보도 청구를 인정하려는 것임.

9) 행정청의 행위 중 어느 것이 처분성이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인정되는지를 뜻함.

10)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의견임.

참고 1

관계 부처 및 협회 등 의견

○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방통위 (2024.9.10.)	• (추후보도청구권 범위 확대) 국민의 인격권 보호 취지에 공감하나, 추후보도청구권 대상을 행정절차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행정청 책임을 언론사에 전가 및 청구권 남용 등 부작용 발생 등 우려에 대한 방송사업자 의견이 있음

○ 협회 의견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언론중재위원회 (2024.9.2.)	• (방송사업자 범위 확대) 2006년 방송법 개정사항이 현행 언론중재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생기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므로 개정 취지에 찬성함 • (언론중재위원 확대) 정원 90명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처리기한 내 사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중재부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인천 등) 당사자의 접근성 강화 및 권리 보장을 위해 시급한 개정이 필요함 • (추후보도청구권 범위 확대) 현행법상 형사조치는 아니지만 행정처분 사실이 보도된 경우는 추후보도청구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피해구제의 공백이 발생하므로, 이를 구제하기 위한 취지의 개정안에 찬성함
한국인터넷신문협회 (2024.9.12.)	• (언론중재위원 확대) 현재의 한정된 중재위원 정원으로는 법정기간 내 신속한 사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중재를 위해서 중재위원 정수 확대 필요. 정원 확대는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사회 계층과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타당한 조치임

○ 민간업계 의견

업체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방송사업자 (SBS)	• (추후보도청구권 범위 확대) '행정처분 해당성' 및 '비위혐의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행사요건의 명확성과 예외사유의 판단이 어려움. 한편, 형사판결과 달리,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취소판결 등에 대한 판결공시제도는 없으며 행정절차의 대상이었던 자에게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청구권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추후 취소판결이 내려졌을 경우 책임 소재는 보도대상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던 행정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있음. 또한,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 보장과의 법익형량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청구 요건 완화에 따른 청구권 남용 등의 부작용에 대한 검토 필요

참고 2

중재위원 증원에 따른 비용추계(6개 중재부(30명) 신·증설시)

예 산 항 목			세 부 내 역	금 액
인건비 ¹⁾	사무처 직원 인건비(신규채용)		42,000,000원*8인*1.19	399,840,000원
	소 계			399,840,000원
경상비	<u>신규 채용 관련 경비²⁾</u>		<u>22,000,000원</u>	<u>22,000,000원</u>
	사무소 임차료	(서울) ³⁾	28,700,400원 * 12월	344,404,800원
		(인천) ⁴⁾	3,500,000원 * 12월	42,000,000원
		(경기제2) ⁴⁾	3,500,000원 * 12월	42,000,000원
	<u>사무소 보증금</u>	(서울) ³⁾	<u>150,000,000원</u>	<u>150,000,000원</u>
		(인천) ⁴⁾	<u>50,000,000원</u>	<u>50,000,000원</u>
		(경기제2) ⁴⁾	<u>50,000,000원</u>	<u>50,000,000원</u>
	<u>지역사택 보증금</u>	(인천)	<u>20,000,000원 * 2인</u>	<u>40,000,000원</u>
		(경기제2)		
	지역사택 임차료	(인천)	500,000원 * 2인 * 12월	12,000,000원
		(경기제2)		
	<u>사무실 시설공사⁵⁾</u>		<u>200,000,000원</u>	<u>200,000,000원</u>
	직무수행경비	(인천소장)	300,000원 * 2인 * 12월	7,200,000원
		(경기제2소장)		
	<u>유형자산⁶⁾</u>		<u>90,000,000원</u>	<u>90,000,000원</u>
	기타 운영비 등		85,000,000원	85,000,000원
	소 계			1,134,604,800원
사업비	중재위원 심리수당		100,000원 * 5인 * 350회	175,000,000원
	중재부장 직무수당		700,000원 * 6인 * 12월	50,400,000원
	중재위원 직무수당		500,000원 * 24인 * 12월	144,000,000원
	소 계			369,400,000원
합 계				1,903,844,800원

1) 중재부 신·증설에 따른 소요 인력 충원을 위해 5급 상당 사무처 직원 8인 신규채용 인건비 편성 (서울중재부 조사관 4명, 인천소장·간사 2명 경기제2사무소장(경기북부지역 관할)·간사 2명)

2) _____(밀줄)은 일회성 운영비

3) 서울사무처 4개 중재부 증설에 따른 업무공간, 심리실 및 중재위원 회의실 마련 위해 임차

4) 인천사무소 임차료 및 보증금은 인근 인천지방법원 시세를, 경기제2사무소 임차료 및 보증금은 인근 의정부법원 시세를 참고

5) 사무실 시설공사비는 서울 4개 중재부 증설에 따른 공사비(직원 업무공간, 심리실 및 중재위원 회의실 추가 마련)와 인천중재부·경기제2중재부 신설에 따른 시설 공사비 모두 포함

6) 서울 4개 중재부(30,000,000원) 및 인천중재부·경기제2중재부(60,000,000원) 운영에 필요한 기초 자산(컴퓨터, 노트북, 복사기, 파티션, 책상, 의자 등) 구매 예산

참고 3

언론중재위 사건 처리현황

1) 조정

(2023년 12월말 기준 / 단위 : 건)

연도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¹⁾ (%)
		조정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2015	5,227	940	218	101(2)	710(4)	322	32	2,633	271	77.9
2016	3,170	961	182	118(4)	416(5)	108	19	1,049	317	72.3
2017	3,230	915	72	61	488(6)	122	86	1,234	252	73.7
2018	3,562	1,081	111	89(7)	645(8)	88	12	1,264	272	71.4
2019	3,544	1,129	121	100(6)	734(26)	279	65	932	184	69.2
2020	3,924	1,245	166	99	891(11)	275	34	1,029	185	67.8
2021	4,278	1,221	146	73(4)	894(16)	596	132	838	378	62.7
2022	3,175	949	69	34	684(8)	450	193	686	110	67.6
2023	4,085	1,599	61	34(3)	793(20)	145	113	1,152	188	74.1

2) 매체유형별 청구현황

(2023년 12월말 기준 / 단위 : 건(%))

연도	청구건수	신문		방송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		기타
		일간신문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2015	5,227(100)	619(11.8)	138(2.6)	892(17.1)	18(0.3)	264(5.1)	2,490(47.6)	799(15.3)	7(0.1)
2016	3,170(100)	405(12.8)	168(5.3)	423(13.3)	16(0.5)	165(5.2)	1,661(52.4)	330(10.4)	2(0.1)
2017	3,230(100)	261(8.1)	119(3.7)	361(11.2)	23(0.7)	206(6.4)	1,842(57.0)	416(12.9)	2(0.1)
2018	3,562(100)	306(8.6)	145(4.1)	331(9.3)	19(0.5)	192(5.4)	2,141(60.1)	421(11.8)	7(0.2)
2019	3,544(100)	357(10.1)	105(3.0)	436(12.3)	12(0.3)	187(5.3)	2,055(58.0)	388(11.0)	4(0.1)
2020	3,924(100)	384(9.8)	122(3.1)	465(11.9)	4(0.1)	247(6.3)	2,102(53.6)	596(15.2)	4(0.1)
2021	4,278(100)	322(7.5)	131(3.1)	495(11.6)	8(1.9)	216(5.0)	2,477(57.9)	609(47.7)	20(4.7)
2022	3,175(100)	234(7.4)	75(2.4)	387(12.2)	6(1.9)	149(4.7)	1,857(58.5)	450(14.2)	17(0.5)
2023	4,085(100)	388(9.5)	99(2.4)	345(8.4)	8(0.2)	218(5.3)	2,491(61.0)	498(12.2)	38(0.9)

○ 피해구제율 = $\frac{\text{피해구제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 중 동의+취하(구제))+그 외 피해구제 건}}{\text{전체 조정청구건수-(계속·기각·각하·계류)}} \times 100$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된 건수임

3) 청구형태별 처리현황

(2023년 12월말 기준 / 단위 : 건(%))

청구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 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정정	1,943	796	34	19	(1)	382	(8)	74	31	523	84	74.1
반론	731	317	12	5	(1)	138	(4)	10	6	195	48	74.0
추후	99	10				3		5	17	63	1	94.8
손배	1,312	476	15	10	(1)	270	(8)	56	59	371	55	72.8
계	4,085	1,599	61	34	(3)	793	(20)	145	113	1,152	188	74.1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된 건수임

참고 4

언론중재위원회 현황

□ 설립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설립일 : '81. 3. 31)

□ 설립목적

-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에 관한 다툼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

□ 중재위원 현황 * 중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

- 임 원 : 위원장 1, 부위원장 2, 감사 2(임원은 언론중재위원 중 호선)
- 중재부 : 18개 중재부(서울 8, 지방 10) 설치(각 5명, 총 90명*)
 - * △1/5 이상은 법관(법원행정처장 추천), △1/5 이상은 변호사(대한변협회장 추천), △1/5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사무처

- 기구 : 3본부(운영, 조정, 연구교육), 1실(심의실), 감사관, 12팀, 10지역사무소
- 정원/현원 : 100명/97명 ('24.8.31.기준)

□ 주요 사업

- 언론조정·중재신청 처리 및 시정권고 업무
- 언론보도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구제방법 안내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언론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언론피해구제제도의 홍보 및 교육
 - ※ 매년 2월말 언론중재위 활동결과 국회 보고

□ 재원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언론중재법 제12조)
 - 예산 : ('22년)12,964백만원, ('23년)13,186백만원, ('24년)13,802백만원

구분 (단위:백만원)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합계
			조정·심의	조사연구	홍보·교육	소계	
24년 예산	8,229	2,718	2,278	314	263	2,855	13,802

참고 5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 현황

순번	법인명	방송국명	방송구역
1	(사)관악공동체라디오	관악소출력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서울 관악구 일부
2	(사)마포공동체라디오	마포소출력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일부
3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성남소출력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경기도 성남시 일부
4	(사)금강에프엠방송	공주소출력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충남 공주시 일부
5	(사)성서공동체에프엠	성서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대구 달서구 일부
6	(사)영주에프엠방송	영주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경북 영주시 일부
7	(사)광주시민방송	광주소출력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광주 북구 일부
8	(사)청암송건호기념사업회	옥천FM공동체라디오	충북 옥천군 일부
9	풀뿌리미디어사회적협동조합	성주FM공동체라디오	경북 성주군 일부
10	(사)고려인마을	광산FM공동체라디오	광주 광산구 일부
11	(사)세종공동체라디오 방송	세종FM공동체라디오	세종시 일부
12	(사)한밭생활문화방송	대전서구FM공동체라디오	대전 서구 일부
13	(사)남해에프엠공동체라디오 방송	남해FM공동체라디오	경남 남해군 일부
14	(사)서대문공동체라디오	서대문FM공동체라디오	서울 서대문구 일부
15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 사회적협동조합	팔달FM공동체라디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일부
16	태백에프엠공동체라디오 사회적협동조합	태백FM공동체라디오	강원 태백시 일부
17	한국문화나눔사회적협동조합	상주FM공동체라디오	경북 상주시 일부
18	(사)전주공동체라디오	덕진FM공동체라디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일부
19	(사)고구리에프엠	구리FM공동체라디오	경기도 구리시 일부
20	와글사회적협동조합	대구동구FM공동체라디오	대구 동구 일부
21	(사)순천미디어네트워크	순천FM공동체라디오	전남 순천시 일부
22	연제공동체라디오 사회적협동조합	연제FM공동체라디오	부산 연제구 일원
23	(사)영월에프엠공동체라디오	영월FM공동체라디오	강원도 영월군 일부
24	(사)안산공동체미디어	단원FM공동체라디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일부

참고 6

제21대국회 유사 법률 발의 및 심사 현황

법률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내용	심사경과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874)	김영주 의원 (20.6.23)	• 언 론 중 재 위 원 회 위원 정원 상한선 확대(90명→120명)	(상임위) •상정('20.7.27) •소위('21.7.27) (대안의결 '21.7.27) •대안의결('21.8.19) (법사위) •상정('21.8.25) •의결('21.8.25)	•여야, 정부 수용 입장 이며, 다만 점진적 증가 의견(이달근의원 '21.7.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8201)	송기헌 의원 (21.2.19)	•비위험의 관련 행정 처분 보도에 대한 추후보도청구 허용	(상임위) •상정('21.6.21) •소위('21.7.27) (대안의결 '21.7.27) •대안의결('21.8.19) (법사위) •상정('21.8.25) •의결('21.8.25)	•쟁점 없음